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도 교육청별 안분액

총액	139,178백만원
----	------------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35,134
부산광역시	10,115
대구광역시	7,229
인천광역시	4,404
광주광역시	4,559
대전광역시	4,612
울산광역시	3,385
세종특별자치시	1,288
경기도	20,913

교육청	금액(백만원)
강원특별자치도	4,676
충청북도	4,855
충청남도	6,544
전북특별자치도	5,188
전라남도	5,148
경상북도	7,806
경상남도	10,166
제주특별자치도	3,156